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2024. 10. 23 선고 2023가단42536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 고 중소기업은행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야
담당변호사 조인명, 한태일

피 고 A
변 론 종 결 2024. 9. 11.
판 결 선 고 2024. 10. 23.

주 문

1. 피고와 B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22. 5. 15. 체결된 증여계약을 취소한다.
2. 피고는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2. 7. 8. 접수 제14867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1) 원고는 2016. 2. 18. (주)C(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와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38만 달러로, 여신만료일을 2021. 2. 16.로 정하여 기한부 수입 신용장 발행에 관한 여신거래약정을 하였고,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소외 회사의 위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0. 6. 24.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한도금액을 미화 150만 달러로 변경하였고, B은 같은 날 원고에게 보증한도를 미화 180만 달러로 정하여 소외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와 소외 회사는 2021. 2. 18.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만료일을 2022. 2. 19.로 변경하였고, 2022. 2. 11. 위 여신거래약정의 여신만료일을 2023. 2. 21.로 변경하였다.

(2) B은 2022. 5. 15. 배우자인 피고에게 유일한 재산인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증여하고(이하 ‘이 사건 증여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가평등기소 2022. 7. 8. 접수 제14867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다.

(3) 원고의 소외 회사에 대한 (1)항 기재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채권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약 15억 원, 이 사건 변론종결일 기준 약 20억이었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약 1억 8,000만 원이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7, 9, 11, 12, 1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에 대한 금융거래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 이 법원의 법원행정처장에 대한 사실조회회신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및 사해행위

1) 피보전채권의 존재

원고와 소외 회사의 여신거래약정에 따른 소외 회사의 채무를 B이 연대보증하였고, 그와 같은

연대보증채권은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전에 발생한 것으로 채권자취소권에 있어서의 피보전채권이 될 수 있다.

2) 사해행위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바(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0다41875 판결, 대법원 2002. 6. 11. 선고 2002다17937 판결 등 참조),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B은 원고에 대한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면서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증여하였으므로, 이 사건 증여계약은 원고 등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

나. B의 사해의사 및 피고의 악의 추정

1) B의 사해의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B은 이 사건 증여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를 비롯한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를 감소시켜 채권자들을 해하게 됨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2) 피고의 악의 추정

가) 사해행위취소소송에 있어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가 악의라는 점에 관하여는 채권자에게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수익자 또는 전득자 자신에게 선의라는 사실을 입증할 책임이 있으므로(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7다18218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악의는 추정된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B의 누나인 E이 2021. 1. 20. 소외 회사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소외 회사는 B 개인의 자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하였으며, 위와 같은 약정에 따라 B이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증여한 후 피고가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고,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으므로,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을 제1, 2, 5, 9호증, 을 제11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B의 누나인 E이 2021. 1. 20. 소외 회사에게 미화 200만 달러를 대여하였고, 당시 소외 회사가 B 개인의 자산을

위 차용금채무의 담보로 제공하기로 한 사실, 피고가 2022. 7. 8.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2023. 10. 26. E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최고액이 6억 원, 채무자가 피고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쳐 준 사실, 이 사건 증여계약 체결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 아무런 제한이 없었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피고가 선의의 수익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사해행위의 취소 및 원상회복의무

따라서 피고와 B 사이의 이 사건 증여계약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B에게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옥희

별지